

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안내문

- ◎ 특별공급 대상 : 국가유공자·국가보훈대상자·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 군인, 장애인, 중소기업근로자
- ◎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◎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, 방문신청 및 동·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, 당첨일로부터 12개월간 다른 분양주택(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)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함.
- ◎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.
- ◎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[2018.05.31. (목)(예정)]에 '홍제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' (<http://www.hongjehyosung.com>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.

※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'주택전시관 방문 신청'에서 '아파트투유(www.ap2you.com) 인터넷 청약 신청'으로 변경됨.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함. (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.)

I. 공급 개요 및 일정

- 공급 위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(홍제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)
- 건축 규모 : 아파트 지하3층, 지상20층 18개동, 총 1,116세대 중 일반공급 4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[특별공급 : 일반(기관추천) 36세대, 다자녀 38세대, 신혼부부 75세대, 노부모부양 9세대 포함]
- 공급 개요

구 분	주택형	일반분양세대수	주택 면적 (㎡)		
			전용면적	공급면적	계약면적
민영 주택	39	11	39.3800	58.8814	95.4785
	48	19	48.2100	71.6040	116.4071
	59A	42	59.9900	84.4953	140.2459
	59C	3	59.9300	84.4456	140.1405
	59D	4	59.9700	85.3087	141.0407
	84A	78	84.9500	112.3514	191.2982
	84B	174	84.9500	113.6814	192.6282
	84C	66	84.9500	112.5514	191.4982
	114	22	114.9500	140.5785	247.4052
소 계		419			

-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세대수

주택형	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				
	소 계	장애인	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추천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중소기업근로자
39	1	1	-	-	-
48	1	1	-	-	-
59A	4	1	1	1	1
84A	7	2	1	2	2
84B	17	4	4	4	5
84C	6	2	1	1	2
소 계	36	11	7	8	10

※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□ 분양 일정 (예정)

구 분	일 자	비 고
입주자모집공고	2018.05.31 (목)	홈페이지
주택전시관 개관	2018.06.01 (금)	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57(대조동)
특별공급 청약 신청	2018.06.05 (화) (08:00 ~ 17:30)	인터넷 신청 아파트투유 홈페이지(www.ap2you.com)
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	2018.06.18 (월)	
계약 체결	2018.06.29 (금) ~ 07.03 (화) (10:00 ~ 16:00)	주택전시관 (토, 일요일 제외)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인-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I. 특별 공급 신청 자격

□ 신청 자격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2호(국가유공자), 3호(국가보훈대상자), 8호 [제35조 제1항 6호(장기복무 제대군인), 7호(10년 이상 복무한 군인), 17호(장애인), 23호(중소기업근로자)]에 해당하시는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[2018.05.31. (목)(예정)]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

-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
- 청약부금(전용면적 85㎡이하 신청분에 한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/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
-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, 아래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자 (단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장기복무 제대군인, 장애인 제외)

[청약 예치기준금액]

구 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경기도
전용면적 85㎡ 이하	300 만원	250 만원	200 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600 만원	400 만원	300 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 만원	700 만원	400 만원
모든 면적	1,500 만원	1,000 만원	500 만원

※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(2018.2.9.)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.

- 무주택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)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[2018.05.31. (목)(예정)]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.

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]

「무주택세대구성원」이란 세대주,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.

-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.
-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·비속으로서 각 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.
-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(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)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.
-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.

